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08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이헌승·김선교·서지영

김예지 • 박준태 • 백종헌

유용원・김 건・송언석

박덕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,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그 결과,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,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2 제10항,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).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.

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4(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 년마다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 관,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 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며,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1조의2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33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

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의2(노인복지주택의 입소	제33조의2(노인복지주택의 입소
자격 등) ① ~ ⑨ (생 략)	자격 등) ① ~ ⑨ (현행과 같
	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⑪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
	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
	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
	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
	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33조의4(노인복지주택에 대한
	실태조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
	관은 3년마다 노인복지주택의
	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
	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
	를 공표하여야 한다.
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
	공공기관, 관련 법인·단체 <u>또</u>
	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
	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 대하
	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
	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
	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	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1조의2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2. · 3. (생략)

⑤ (생략)

③ 제1항에	따른	실태조	:사의
내용·방법	등에	필요한	사항
은 보건복지	부령으	로 정한	·다.

제61조의2(과태료) ① ~ ③ (현 행과 같음)

4	 	 	 	 	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33조의2제10항을 위반 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한 자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